언어학 투고규정

제1장 사용 언어

제 1조 『**언어학**』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제2장 논문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및 게재 신청과 심사

제2조 『**언어학**』의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우리 학회 회원에게 주어지며, 한 사람의 필자는 한 해에 두 번까지 『**언어학**』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은 대한언어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4조 『**언어학**』에 논문 투고 시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신청서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논문 심사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 받아 논문최종본을 제출할 때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논문최종수정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발간 일정

제5조 『**언어학**』은 1년에 4번 발행한다. 그 가운데 한 번은 국제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언어는 영어이다.

제6조 발간일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1) 봄호의 발간일은 3월 31일, 원고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다.
(2) 여름호의 발간일은 6월 30일, 원고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3) 가을호의 발간일은 9월 30일, 원고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4) 겨울호의 발간일은 12월 31일, 원고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단, 상기 원고 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의 편수가 적정 수 이하일 경우에는 원고를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의 투고 시 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학회에 입회원서를 내고 학회 입회비와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학회 재무이사에게 납부한 후 논문을 투고한다. 이미 학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료를 재무이사에게 납부한 후 논문을 투고한다. 논문 게재료는 출판사 편집본이 나온 후 논문 쪽수를 확인한 후 바로 납부한다.

제8조 모든 논문의 심사료는 60,000원으로 최초 논문투고 시 바로 납부하며, 심사 후 게재료

는 일반 논문은 200,000원, 연구비 수혜 논문은 300,000원으로 게재확정 후 출판사 편집본이 나온 후 납부한다.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원고의 길이가 20쪽을 넘을 때는 초과 1쪽 당 게재료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의 논문을 재심 받을 경우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불가' 판정 1건당 재심 심사료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해외 거주 학자는 회원, 심사 및 게재료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대학원생 단독으로 투고하는 논문의 경우 심사료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제4장 원고의 제출 방법

제9조 원고는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JAMS)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 및 게재료를 재무이사에게 납부하고, 그 결과를 원고 제출과 동시에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제10조 국내 투고 원고는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한다. 해외 투고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7' 이상으로 작성해서 낼 수 있다.

제11조 논문초록은 영어로 작성하고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되 그 길이는 주제어를 포함하여 200 단어 이상 250 단어 이하로 한다.

제12조 투고 논문의 논문작성양식은 별도로 제시하는 '*언어학* 논문작성 안내'를 따른다.

제5장 원고의 발행 및 저작권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확정된 논문을 학술지 『**언어학**』에 게재하여 발행한다.

제14조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대한언어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논문과 함께 저작권 활용 동의서(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서약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등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대한언어학회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공개,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논문 공개 등 논문의 공개 및 출판, 판매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일체는 대한언어학회에 귀속된다.

부칙

제15조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